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2024년 긴급지원 지원금액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 '23.12.06.~12.18.(13일간)

3) 규제심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00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월단위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제8호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3- 호, 2023.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table><tr><td>가구구성원수</td><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d>6인</td></tr><tr><td>지 원 금 액</td><td>623,300</td><td>1,036,800</td><td>1,330,400</td><td>1,620,200</td><td>1,899,200</td><td>2,168,300</td></tr></table>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table><tr><td>가구구성원수</td><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d>6인</td></tr><tr><td>지 원 금 액</td><td>713,100</td><td>1,178,400</td><td>1,508,600</td><td>1,833,500</td><td>2,142,600</td><td>2,437,800</td></tr></table> ※ 월단위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table><tr><td>지원종류</td><td>연료비</td><td>해산비</td><td>장제비</td><td>전기요금</td></tr><tr><td>지원금액</td><td>110,000</td><td>700,000</td><td>800,000</td><td>500,000 이내</td></tr></tabl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table><tr><td>지원종류</td><td>연료비</td><td>해산비</td><td>장제비</td><td>전기요금</td></tr><tr><td>지원금액</td><td>150,000</td><td>700,000</td><td>800,000</td><td>500,000 이내</td></tr></tabl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삭 제>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